

계약직 조종실기교수 임용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계약직 조종실기교수 임용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계약직 조종실기교수(이하 ‘조종실기교수’라 한다)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) 이 규정은 조종실기교수에 적용한다.

제3조 (정의) 조종실기교수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근무조건, 처우, 임용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기간에 비행교육원에서 학생조종실기교육을 전담할 목적에 한하여 임용되는 교수를 말한다.

제4조 (자격) 조종실기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학사학위이상 소지자
2. 삭제<2008.8.13>
3. 조종교육증명 소지자
4. 삭제<2008.8.13>
5.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

제5조 (직급) 조종실기교수의 직급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조종실기교수라 칭한다.

제6조 (의무) 조종실기교수는 본 대학교에서 비행교육을 연 300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, 학사업무협조 등 전임교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제7조 (겸직금지) ① 조종실기교수는 타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.

- ② 조종실기교수가 전임이 아닌 직에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8조 (임용기간) ① 조종실기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조종실기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총장은 조종실기 업적 등을 참작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

제9조 (임용절차) ① 조종실기교수의 임용은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임용 및 전형은 본 대학교 조종실기교수 신규임용절차에 준한다.

제10조 (임용계약) ① 임용계약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개인별로 체결한다.

- ②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임용기간
2. 급여내역
3. 책임시간
4. 기타 필요한 계약사항

- ③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.

제11조 (신분보장) 조종실기교수는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 준하는 책임과 신분을 보유한다.

제12조 (휴직) 조종실기교수는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.

제13조 (처우) 조종실기교수의 보수는 연봉액을 별도로 정한 후 분할 지급한다.

제14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, 법인정관 및 본 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